

## ■ 법률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단서 생략)

제2조(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① 제8조제3항,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58조제4항, 제63조제2항 · 제3항, 제75조의2제1항 · 제3항, 제75조의4제2항, 제78조의2 본문,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185조 및 제1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